



제 418회 국회 (정 기 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축산물의 수급 안정 규정〉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62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축산물의 수급 안정 규정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소회의원 등 15인

나. 제 안 일 : 2024. 9. 25.

다. 회 부 일 : 2024. 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연
쇄 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
는 실정임.

장기적으로 폭염·폭우 같은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서 가격 급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 문제 해소
를 위한 내용이 부재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
하여 농축수산업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제1
항제10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축산물의 수급 안정 규정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현행법 제47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2024.9.26.)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제2204267호) 제47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신설>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7조(기금의 용도) ① ----- -----. 1. ~ 9. (현행과 같음)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수급 안정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축산물의 수급안정에 필요한 경우 축산발전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없음.

2) 축산관련 단체 협의회

현행 「축산법」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사업 실시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 개정이 불필요함.

다. 검토의견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2024.9.26.)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라 한다) 제47조제2항¹⁾에서는 정부의 기후위기에 따른 사회 안전망 마련 의무에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 파악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과 피해보상 방안”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 제47조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농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수급 불안정을 야기하여 소비자물가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 파악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과 피해보상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재원으로, 「축산법」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을 사용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제2204267호)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대책과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47조제1항제10호의 “수급안정”의 의미가 축산물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수매·비축 등을 통한 ‘가격 안정화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²⁾과 같이 가격 안정화 사업 외에 ‘피해보상 방안’까지도 의미하는 것인지 대하여 불명확한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47조제1항제10호의 “수급안정”의 의미를 ‘수급안정 사업’만으로 해석할 경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민국 헌법」³⁾ 및 「축산법」⁴⁾에 따라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발생 및 이

2)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3)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4) 「축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하 생략)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

상기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물 수급 불안정 시 수매·비축 등을 통해 수급 안정 사업⁵⁾을 기시행 중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 축산발전기금으로 시행한 수급안정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수급안정 사업 추진 내역	투입 예산
2020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발생으로 인한 수매 등 지원	958
2021	○‘20/21년 AI 발생에 따른 국내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신선란 39천만개 수입	115,996
2022	○설 성수기 특별 공급기간(1.2~17일, 평일기준 12일) 중 계란공판장을 통해 계란 비축물량 1,668만개 공급하여 수요 증가분 충당 및 가격안정 도모 ○한우암소·돼지 도축수수료 지원을 통해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 한우암소 감축을 통해 중장기적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한우 공급량 감소 효과 발생	16,102
2023	○계란가격 안정을 위하여 신선란 수입을 추진하는 한편, 국산 계란 비수기 계란 비축 및 성수기 방출 추진 ○529만개의 수입 종란으로 사육된 433만마리의 육계가 10월~12월 시장에 공급되어 실용계·도매·소비자 가격 하락에 기여함	2,855
2024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증가로 계란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미국산 신선란 초도물량 112만개 도입 ○긴급 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편성하여 3~5월 한우·한돈 할인행사, 계란·닭고기 납품단가 지원 실시	6,36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2025. 10. 30.) 제출

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5) 세부사업 축산물수급관리(보조, 3731-303) 사업 내 축산물수급안정(위탁) 사업

또 한편으로는, 안 제47조제1항제10호의 “수급안정”의 의미가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이 가격 안정화 사업 외에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및 축산물의 수급·가격 불안정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까지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상기 “피해 보상 방안”을 「축산법」의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규정하는 것이 「축산법」에 규정한 다양한 목적⁶⁾ 및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목적⁷⁾에 비추어볼 때,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폭염·가뭄·홍수·이상저온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농가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및 복구 비용 등을 「농어업재해대책법」⁸⁾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

6) 「축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축산법」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8)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문 의 처
02)6788-5426

각 호에 따른다.

1.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
 - 가. 양수(揚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金) 및 전기료
 - 나. 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 다. 양수용 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4. 유실(流失)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5.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린 가축의 구입비
7.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草地)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육비
- 8의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거나 새로 가축을 기르기 위하여 농작물·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폐기비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 가. 이재민의 구호
 -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다. 영농자금(營農資金)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10. 그 밖의 지원 사항
(이하 생략)